

집단소송법(안) 등 토론회

- 법무부의 2020. 9. 28.자 입법예고 내용을 중심으로 -

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 석 훈

법무부 집단소송법(안) 개요

- 현재 증권분야에 도입된 집단소송을 모든 분야에 확대적용
 - ※ 집단소송 ~ 대표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도 포함하여 제소
 - 제조물 소비자 피해뿐만 아니라 공해, 독과점, 가짜뉴스 피해 등도 포함
 - 기존 「증권관련 집단소송법」 폐지·흡수
 - 집단적 피해 손해배상의 효율적 수단 확보와 기업의 가해 예방 도모
 - 고의나 중과실 상행위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동시 도입
- 원고의 주장·증명책임 완화, 변형된 증거개시제도 마련
- 피고의 책임 및 손해배상액 인정에 국민참여재판 도입
 - ※ 국민참여재판 ~ 현재 형사재판에 한정
- 남소(濫訴)방지장치의 대폭 축소
 - 소송허가결정에 대한 불복 불가, 대표당사자 결격사유 삭제 등

[쟁점1] 집단소송 대상 무제한 확장

- 제외신고형 집단소송은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 전원에게 승패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제소사실을 몰랐던 피해자의 이익 침해 가능
 - 소송허가결정 고지방법의 불완전성 ~ 일간신문, 대법원규칙 소정 방법
- 미국형 집단소송제와 유사함, 미국처럼 남소(濫訴)의 사회문제 야기
 - 미국의 경우 막대한 청구금액, 증거개시절차, 추가하락 등의 피고부담
→ 화해를 노린 남소의 부작용 심각 → PSLRA(1995)
 - 실제로 집단소송 대부분이 청구이유 유무 불문하고 화해로 종결 경향
- 일본, 프랑스, 독일은 소비자분쟁으로 제한, opt in형 단체소송 채택
- 소액 다수 피해의 효율적 구제라는 집단소송 도입취지 몰각

[쟁점2] 대표당사자 자격 및 소송대리인 수임 규제 폐지

- 증권집단소송법에서 대표당사자 자격으로 '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자'의 예시규정을 두었던 것은 선제소 경쟁으로 무모한 소송이 남발되는 것은 제한하려던 것
 - 미국 PSLRA 남소방지개혁내용을 증권집단소송법이 반영했던 것
 - 증권집단소송법에서 남소방지 위해 규정되었던 위 예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직업적 대표당사자를 내세운 국내외 전문변호사들에 의한 집단소송의 남소(濫訴)가 예상됨
- 대표당사자 자격제한을 두지 않고 증권집단소송법의 소송대리인 수임제한을 폐지하는 것은 국내외 전문변호사들에게 직업적 대표당사자를 앞세워 집단소송을 남용하는 길을 허용하는 것임
 - 미국 PSLRA ~ 변호사의 남소방지 위해 대표당사자는 기관투자자가 아닌 한 3년 내 5회 이상 대표당사자로 선정 불가

[쟁점3] 소송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 불가 규정

- 집단소송 허가결정만으로도 피고기업에 중대한 영향→남소가능
- 불허가결정에 대한 원고의 즉시항고권과 비교하여 불균형
 - 미국과는 달리 허가절차와 본안절차를 엄격히 분리하여 본안절차에서 허가결정을 다룰 수 있는 길이 없으므로 허가결정에 대한 피고의 불복 절차가 필요함
 - 증권집단소송법에서는 허가결정에 대한 피고의 즉시항고권을 인정했는데, 이를 삭제한 것은 부당함
- 미국·캐나다 등 해외 입법례에 비추어 불균형
 - 미국의 개정 FRCP(1998)에 허가결정에 대한 불복 가능 명시
 - 미국은 허가절차와 본안절차가 분리되지 않아 본안심리 중 언제든지 허가취소 가능

[쟁점4] 주장·증명책임 완화, 변형된 증거개시제도

- 민사소송절차와의 정합성 결여
 - 민소법의 문서제출명령제도를 넘는 특혜를 인정하는 근거 불충분
 - 집단소송의 손해배상액 산정은 표본적·평균적·통계적 방법으로도 가능한 만큼, 피고의 책임인정에서는 주장·증명책임의 일반원칙 관철 필요
- 미국의 경우 남소의 주된 원인이 개략적 주장과 증거개시제도
 - 미국은 확실한 근거 없이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증거개시를 통하여 증거수집을 하는 투망식 소송을 막기 위해 소장기재의 특정을 요구하고, 그 불특정을 이유로 피고의 소 각하신청이 제기되어 있는 동안에는 증거개시절차 정지(PSLRA)
 - 법안은 소송허가절차에서도 본안절차의 주장·증명책임 완화와 변형된 증거개시제도 규정을 그대로 준용 → 투망식 남소에 무방비

[쟁점5] 책임 및 손해배상액 인정에 국민참여재판 도입

- 집단소송은 청구 인정 여부나 손해배상액 산정이 복잡하므로 정밀해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성이 있으며, 사인간 이해관계의 조정 문제를 다루는 재판절차임
 - 단순한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이 요구되고 국가형벌권 유무와 양형 정도를 다루는 형사소송과는 질적으로 상이
 - 형사소송의 배심제도는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을 반영하고 형벌권 행사의 이해관계자인 국민의 판단을 반영하려는 것 → 집단소송에는 부적합
- 집단소송의 청구 인정이나 손해배상액 산정에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함으로써 사법재판이 정치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고 사실관계의 확정이 여론에 치우쳐 왜곡될 수 있음

상법개정안에 대한 평가

- 다중대표소송,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, 상장회사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에 관한 택일설 명문화는 기업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기 보다는 국내외 투기펀드나 경쟁기업에 경영권 간섭에 따른 부당이득 취득이나 영업기밀 탐지의 기회만 제공하는 것임
 - 다중대표소송은 100% 완전모자회사 관계에서만 인정해야 함
 - 원래 감사위원회제도는 감사위원의 독립성보다는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므로,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상장회사도 일반 감사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 됨